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3. 13) 상정

○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3. 13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식산업과장 조 계 형)

가. 제안이유

- 2004. 5월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이 준공예정에 따라 401동을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연구개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R/D기능 집적화로 기업하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유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연간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,
- 기 구성되어 있는 부천시중소·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”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식기반산업 유치·육성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·법인·단체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5조 내지 제7조)
-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부천시 중소·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대행 하도록 정함 (안 제8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위원회 대행관련,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 하는지	<input type="radio"/> 검토보고 사항에 동의함 제8조제2항중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함에 동의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 음

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수정의결

6. 수정안 요지

별 첨

7. 소수의견 요지

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92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회)

제안년월일 : 2003년 3월 18일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중소·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함에 있어 개정 조례 안 조문기재 착오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조례안의 착오 수정 (안 제8조 제2항)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제8조제2항중 “제14조”를 “제13조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) ①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권고, 심의, 건의 등을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원·대학교수·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임직원·기업인·관계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-----육성-----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천시중소·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부천시조례 호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역경제의 활성화를”을 “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”로 한다

제2조중 “공업배치및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 그리고”를 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5의4호”로 한다

제5조제1항중 “부천시 공유재산(이하 “시 공유재산”이라 한다)을 지식기반 산업관련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게”를 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·법인·단체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부천시 공유재산(이하 “시 공유재산”이라 한다)을”로 한다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

제5조의2(사용료) 제5조에 의한 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연간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, 일할계산할 수 있다.

이 경우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요율을 정한다

제5조의3(지원) ①시장은 제5조에 의해 사용을 허가받은 비영리연구기관·법인·단체 및 연구개발기능 보유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②시장은 관내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조성하는 연구동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제8조제1항중 “추진”을 “육성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부천시중소·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<u>지역경제의 활성화</u>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</u>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지식기반산업”이라 함은 <u>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2항및제3항에 규정된 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</u> 그리고 <u>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상산업과 그와 연관된 만화·캐릭터·팬시등을 포함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5의4호에 규정된 산업과</u> ----- -----</p>
<p>제5조(공유재산의 사용)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<u>부천시 공유재산(이하 “시 공유재산”이라 한다)을 지식기반산업관련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공유재산의 사용) ① ----- -----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, 법인, 단체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부천시 공유재산(이하 “시 공유재산”이라 한다)을</u>-----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5조의2(사용료) 제5조에 의한 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, 일할계산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요율을 정한다.</u></p>

<p><u><신설></u></p> 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) ①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권고, 심의, 건의등을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원·대학교수·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임직원·기업인·관계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의3(지원) ①시장은 제5조에 의해 사용을 허가받은 비영리 연구기관·법인·단체 및 연구개발기능 보유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조성하는 연구동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 (-----육성-----) ① ----- ----- -----육성----- -----.</p> <p>②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 지원등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천시중소·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